의안번호	2211256
의 뢰 인	남인순 의원
회 답 일	2025.7.11.
추계번호	25C3577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※ (현행법 제3조제3항)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은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가가 정한 적정 인건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○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”을 제시하고 있으며, 현행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-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국고지원시설이 97.5%, 지방이양시설이 106.2%(실태조사 준수율 = Σ 개인별 보조금 기본급 / Σ 가이드라인상 해당 직급 및 호봉 기본급)

○ 국고지원시설 중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시설이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해당 시설에 고용된 사회복지사에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❑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현재 국고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직급 및 호봉별 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, 개정안 시행 시 국가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○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행복e음의 종사자별 인건비 교부금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, 개인별 정산 및 결산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은 사람의 수와 직급 정보, 부족액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

❑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